



제 414회 국회 (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체육계 인권침해” 정의 신설 등 〉

■ 김은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126608호)

2024. 5.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문위원 정환철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1
III . 주요내용	2
IV . 검토의견	3
1. “체육계 인권침해” 정의 신설	3
2. 체육지도자의 필요적 자격취소 사유 확대	7
3. 체육계 인권침해 피해자에 대한 보호 강화	11
4. 체육단체의 인권침해 사건 징계조치에 대한 재심의 요구권 신설	14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김은희의원 등 13인
2. 발 의 일: 2024. 3. 7.
3. 회 부 일: 2024. 3. 8.

II.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성폭력 등 폭력행위로부터 체육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스포츠윤리센터를 두고 있으며, 해당 기관을 중심으로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에 관한 조사와 구체적인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관련 제도가 마련되어 있음.

그러나 스포츠윤리센터의 활동만으로는 성폭력 등 폭력으로부터 체육인을 보호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측면이 있고, 피해자 보호에 있어서도 제도적인 한계가 존재하고 있어 체육계 인권침해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과 구체적인 방안 마련을 위해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실태조사에 대한 통계를 작성·관리하도록 규정하였음.

또한 스포츠계의 신고자·피해자 보호와 치료를 더욱 강화하도록 하여 체육계의 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스포츠윤리센터의 기능을 보완하도록 하였음.

따라서 성폭력 등 폭력 행위로부터 체육인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체육계 인권침해를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체육지도자의 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한편,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

Ⅲ. 주요내용

1. 체육계 인권침해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를 신설함(안 제2조제11의3 신설).
2. 선수에게 특수상해, 성추행·성폭행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체육지도자의 자격 취소를 의무화함(안 제12조제1항 단서).
3.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로 인하여 피해자가 전문가로부터 심리상담 등을 받은 경우 해당 비용을 피신고자가 부담하도록 함(안 제18조의7제2항 및 제3항 신설).
4. 체육단체의 징계 조치가 징계 사유에 비추어 가볍다고 인정되는 등 재심의를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스포츠윤리센터가 해당 체육단체에 재심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의9제4항 신설).
5.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실태조사를 위한 자료제출 요구 권한을 명시하고, 정책수립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통계를 작성·관리하도록 함(안 제18조의16제2항 및 제3항 신설 등).
6.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사용 용도에 체육계 인권침해에 관한 실태조사 및 예방·대응활동 관계자에 대한 교육·훈련, 신고자·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연구·조사, 체육계 인권침해로 인한 피해 상담 및 법률적 지원 등을 명시함(안 제22조제1항제11의4, 제11의5 및 제11의6 신설).

IV. 검토의견

1. “체육계 인권침해” 정의 신설

가. 개정안의 요지

개정안은 “체육계 인권침해”를 운동경기, 훈련, 체육단체의 운영 등 체육과 관련된 시간·공간·관계 속에서 선수 등 체육인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인권침해 행위로 정의하면서, 행위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열거하려는 것임(안 제2조).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11의2. (생략) <u><신설></u>	제2조(정의) ----- -----. 1. ~ 11의2. (현행과 같음) 11의3. “체육계 인권침해”란 운동경기, <u>훈련, 체육단체의 운영 등 체육과 관련된 시간·공간·관계 속에서 선수 등 체육인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인권침해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u> <u>가.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 언어적·정서적</u>

12. (생략)	<u>· 신체적 폭력 행위</u> <u>나. 성희롱·성폭력 등 성적인 폭력 행위</u> <u>다. 「학교체육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학생선수의 학습권을 박탈하거나 침해하는 행위</u> <u>라. 그 밖에 인권침해 행위로서 스포츠의 가치와 위상을 저해하는 행위</u> 12. (현행과 같음)
----------	--

나. 검토의견

현행법은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관련 명단 공개(법 제12조의3), 선수 등 체육인 보호 시책의 마련(법 제18조의2), 스포츠윤리센터의 주요 업무(법 제18조의3제3항) 등에서 ‘체육계 인권침해’와 관련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체육계 인권침해’에 대한 정의규정은 없음.

개정안은 ‘체육계 인권침해’를 구체적으로 정의하여 그 뜻을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인권침해 해당 여부, 스포츠윤리센터의 업무 범위 등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궁극적으로는 체육인 인권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선수 등에 대한 인권침해는 언어폭력, 신체폭력, 성폭력, 학습권 침해, 사생활 침해와 불공정 등으로, 개정안은 이러한 인권침해 사례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임.

[표] 스포츠 인권침해 유형

종 류	특 징
언어폭력	욕설, 모욕, 조롱, 압박지르기 등의 언어폭력은 조금 심한 말, 거친 말 정도로 생각될 수 있으나 때로는 신체폭력보다 더 큰 고통을 줄 수 있음.
신체폭력	훈련과정에서 자행되는 체벌이나 기합은 선수에게 심각한 고통을 주는 폭력으로 정신력 강화나 태도 교정이라는 명목으로 발생하여, 선수들이 폭력을 당연시하게 되는 문제가 있음.
성폭력	‘성적 자기결정권’, 즉 자신의 몸이나 성에 대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는 폭력 유형으로 스포츠 공동체처럼 유대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성폭력은 벗어나기 힘들고 외부로 밝히기 어려움.
학습권 침해	학생선수들의 과잉 훈련은 교우관계와 학교생활을 빼앗고 선수를 학습으로부터 멀어지게 하여 체육 이외의 삶을 영위하기 어렵게 만들.
사생활 침해와 불공정	스포츠 공동체 속에 만연한 권위주의적 문화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조직 분위기를 경직시키고 개인의 역량 발휘를 어렵게 하며 부당한 요구, 불공정한 계약 등을 요구할 수 있음.

자료: ‘스포츠가 버려야 할 것들’(국가인권위원회, 2020년)

참고로, 「스포츠 인권 가이드라인」(국가인권위원회, 2023년)은 체육단체 등이 소속 선수·지도자, 선수관리 담당자, 직원과 관리자에게 스포츠 폭력과 차별의 개념,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대응 메뉴얼과 행동강령을 정기적으로 교육하도록 권고한 바 있음.

다만, 체육계 인권침해의 구체적인 유형으로 언급한 안 제11호의3라목 “스포츠의 가치와 위상을 저해하는 행위”는 행위 내용을 특정할 수 없어 법 적용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동 행위에 대해 벌칙·제재 등이 가해질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명확성에 반하므로,

동 규정이 선언적 의미에 머무르지 않도록 인권침해 행위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예시하거나 시행령에 위임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¹⁾

참고로, 문화체육관광부는 개정안 가목 및 나목에 따른 ‘폭력행위’와 라목에 따른 ‘그 밖에 인권침해 행위로서 스포츠의 가치와 위상을 저해하는 행위’는 이미 현행 제18조의3제3항제1호²⁾를 통해 간접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다목의 ‘학생선수의 학습권 박탈’에 관한 사항은 「교육기본법」 제3조³⁾에 따른 ‘학습권’ 보장에 관한 사항으로 ‘체육계 인권침해’의 유형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1) 2022. 11. 16. 제정된 「서울시 체육인 인권보호 규정」은 피해자, 신고자에게 협박, 회유 등 2차 가해 행위도 체육인에 대한 인권침해 사례로 포함하는 등 인권침해 행위의 유형을 보다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는 점을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2) 제18조의3(스포츠윤리센터의 설립) ③ 스포츠윤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등에 대한 신고 접수와 조사

가. 선수에 대한 체육지도자 등의 성폭력 등 폭력에 관한 사항

나. 승부조작 또는 편파판정 등 불공정에 관한 사항

다. 체육 관련 입시비리에 관한 사항

라. 체육단체·경기단체 및 그 임직원의 횡령·배임 및 뇌물수수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보조금 및 「지방재정법」 제32조의4에 따른 지방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 금지 위반에 관한 사항

마. 그 밖에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사항

3) 「교육기본법」

제3조(학습권)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 받을 권리를 가진다.

2. 체육지도자의 필요적 자격취소 사유 확대

가. 개정안의 요지

개정안은 체육지도자가 선수에게 특수상해, 성추행·성폭행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해당 체육지도자의 자격 취소를 의무화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2조(체육지도자의 자격취소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지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2조의2에 따른 체육지도자 자격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5년의 범위에서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12조(체육지도자의 자격취소 등) ① ----- ----- ----- ----- ----- ----- <u>제4호까지, 제5호(특수상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한정한다) 및 제6호(성추행, 성폭행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한정한다)</u> ----- -----.
1. ~ 8. (생략) ② ~ ⑤ (생략)	1. ~ 8.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나. 검토의견

현행법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체육지도자 자격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해당 체육지도자 자격을 임의적으로 취소하거나 5년의 범위에서 자격을 정지할 수 있으며,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체육지도자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② 자격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③ 체육지도자 자격증을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 ④ 체육지도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자격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⁴⁾

개정안은 여기에 더하여 체육지도자가 선수에게 특수상해, 성추행·성폭행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도 필요적 자격취소 사유로 규정하여, 체육지도자의 자격유지 요건을 더욱 강화하고 있는바, 궁극적으로는 선수들의 인권보호를 더욱 강화하려는 취지임.

4) 제12조(체육지도자의 자격취소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지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2조의2에 따른 체육지도자 자격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5년의 범위에서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체육지도자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자격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3. 체육지도자 자격증을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
4. 제11조의5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5. 선수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한 경우
6. 선수에게 성희롱 또는 성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7. 제11조의6제1항에 따른 재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8. 그 밖에 직무수행 중 부정이나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체육지도자가 선수에게 성추행·성폭력 등을 저지르고도 체육현장에 여전히 남아있어,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일으키는 등의 사례가 있었음에 비추어, 개정안의 필요적 자격취소 사유 확대는 입법 취지를 인정할 수 있음.⁵⁾

다만, 현행법이 결격사유(법 제11조의5)⁶⁾와는 별도로 “선수에게 성희롱·성폭력, 폭행·상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를 재량적 자격취소 사유(법 제12조제1항제5호 및 제6호)로 규정한 것은,

확정판결 전이라도 일선 체육지도 현장에서 피해자를 가해자로부터 분리시킬 필요가 있는 상황과 그렇지 않은 상황이 있을 수 있는 등,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는 상황에 보다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려는 입법 취지로 보임.⁷⁾

5) “스포츠 성폭력 신고해도 피해자·가해자 분리조치 안 돼”, 한겨레, 2019.01.16.

6) 제11조의5(체육지도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체육지도자가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5. 선수를 대상으로 「형법」 제2편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를 저지른 체육지도자(제12조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사람을 포함한다)로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라 자격이 취소(이 조 제1호에 해당하여 자격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자격검정이 중지 또는 무효로 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7) 「국민체육진흥법」(법률 제16931호, 2020. 2. 4., 일부개정) 제12조제1항의 개정 논의 경과 참고(2019. 7. 16., 제369회국회(임시회) 문화체육관광소위 제1차 회의록 p.10)

이러한 취지를 고려하면, 재판상 혹은 객관적으로 명확히 확정되지 않은 행위를 토대로 체육지도자 자격을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할 경우,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 직업의 자유 등과 상충될 소지가 있어 신중히 논의한 후 입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봄.

따라서, 개정안과 같이 체육지도자가 선수에게 특수상해, 성추행·성폭행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확정판결 이전이라도 자격을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하는 것은 선수 인권보호의 취지와 함께 기존 법률과의 관계, 무죄추정의 원칙, 체육지도자의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음.⁸⁾

참고로, 문화체육관광부는 결격사유에 따른 의무적 자격취소가 이미 규정되어 있으므로, 개정안에 대해 신중히 검토하여야 한다는 입장임.

8) 이와 관련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입법례를 살펴보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의 필요적 자격 취소사유(제85조) 중 하나로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를 규정하는 등 확정판결을 전제로 자격을 취소하고 있음.

3. 체육계 인권침해 피해자에 대한 보호 강화

가. 개정안의 요지

개정안은 스포츠윤리센터의 장이 피신고자, 소속기관의 장에게 피해자에 대한 심리상담, 일시보호, 치료 조치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조치에 수반되는 비용은 피신고자가 부담할 의무를 규정하려는 것임 (안 제18조의7).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8조의7(신고자등의 보호) (생략)	제18조의7(신고자등의 보호)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설>	② 스포츠윤리센터의 장은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피신고자, 그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2. 일시보호
	3.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신설>	③ 피해자가 제2항 각 호에 따른 심리상담 등을 받는 데에 사용되는 비용은 피신고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자의 신속한 치료를 위하여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스포츠윤리

	센터의 장이 부담하고 이에 대한 상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	--

나. 검토의견

현행법상 스포츠윤리센터는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등의 신고자 및 피해자에 대한 치료·상담, 법률지원, 임시보호 및 전문기관 연계 등 신고자 및 피해자를 위한 사업을 수행함.⁹⁾

[표] 스포츠윤리센터 피해자 지원 사업

종류	지원내용	지원기간	지원금액
기본지원	- 초기상담, 정서·지지상담 - 피해자 보호·지원 관련 전문기관 연계 등	-	-
의료지원	피해에 대한 신체적, 정신적 치료비용	센터 상담·신고 접수일로부터 3년	실비 지급 (최대 200만원)
상담지원	- 초기 심리검사(1회에 한함) - 정서·심리 상담비용 - 정서지원 프로그램 이용료	센터 상담·신고 접수일로부터 3년	실비 지급 (최대 200만원)
법률지원	형사사건 관련 소송비용 - 소장 작성, 변호사 선임	센터 상담·신고 접수일로부터 3년	실비 지급 (최대 300만원)

9) 제18조의3(스포츠윤리센터의 설립) ③ 스포츠윤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등에 대한 신고 접수와 조사
 - 선수에 대한 체육지도자 등의 성폭력 등 폭력에 관한 사항
 - 승부조작 또는 편파판정 등 불공정에 관한 사항
 - 체육 관련 입시비리에 관한 사항
 - 체육단체·경기단체 및 그 임직원의 횡령·배임 및 뇌물수수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보조금 및 「지방재정법」 제32조의4에 따른 지방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 금지 위반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사항
- 신고자 및 피해자에 대한 치료 및 상담, 법률 지원, 임시보호 및 연계
- 긴급보호가 필요한 신고자 및 피해자를 위한 임시보호시설 운영

주거지원	• 소속 기관·단체에서 운영하는 숙소(기숙사)에서 일시 퇴소 시 긴급거주비용	최대 3개월	최대 200만원
체육활동지원	• 체력 단련, 재활 등을 위한 체육활동비 (경기인·선수로 등록되어 있는 자)	최대 6개월	최대 100만원

자료: 스포츠윤리센터

또한, 스포츠윤리센터의 장은 신고자 및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구제와 더불어, 조사가 개시되는 경우 신고자나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피신고자나 그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신고자 등과 피신고자 간 물리적 공간의 분리조치, 피신고자에 대한 직위해제 조치를 권고할 수 있음.¹⁰⁾

개정안은 기존 스포츠윤리센터의 장뿐만 아니라, 피신고자와 그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도 심리상담과 치료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적극적인 보호조치의 주체를 확대하여 신고자 또는 피해자를 더욱 두터이 보호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은 스포츠윤리센터의 장이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전문가 심리상담 등의 조치를 피신고자에게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10) 제18조의7(신고자등의 보호) 스포츠윤리센터의 장은 조사가 개시되는 경우 인권침해가 계속되고 있다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고, 이를 방지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신고자 또는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피신고자, 그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1. 신고자등과 피신고자의 물리적 공간을 분리
2. 피신고자의 직위를 해제하거나 직무를 정지하는 등의 조치
3. 피신고자가 신고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신고자등에게 접촉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치

있는데, 분쟁 당사자인 피신고자가 피해자에게 적극적이고 성실한 보호 조치를 취할 것을 기대하기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고,

확정판결이나 객관적인 결정 절차를 전제하지 않고 피신고자임을 이유로 피해자 보호조치에 수반하는 비용을 의무적으로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이나 적법절차 원칙 등에 비추어 신중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봄.

따라서, 개정안은 보호주체의 다양화와 적극적인 조치를 통한 피해자 보호조치 강화라는 입법 취지와 더불어, 실효적이고 가능한 조치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헌법상 무죄추정 원칙의 취지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음.

4. 체육단체의 인권침해 사건 징계조치에 대한 재심의 요구권 신설

가. 개정안의 요지

개정안은 체육계 인권침해의 당사자에 대한 체육단체의 징계조치가 징계사유에 비추어 가법다고 인정되는 경우, 스포츠윤리센터가 체육단체에 대해 징계의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9제4항 신설).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8조의9(고발 및 징계요구) ① ~ ③ (생략) <u><신설></u>	제18조의9(고발 및 징계요구)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u>스포츠윤리센터는 제2항에 따른 체육단체의 징계 조치가 징계 사유에 비추어 가볍다고 인정되는 등 재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체육단체에 재심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u>

나. 검토의견

현행법상 누구든지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에 해당하는 사항을 알게 된 경우 스포츠윤리센터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음.¹¹⁾

또한, 스포츠윤리센터는 접수된 신고에 대해 조사하고, 신고·상담 및 조사내용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문체부장관에게 책임자 징계 요구를 요청하거나, 체육지도자 자격취소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문체부장관은 직권 또는 스포츠윤리센터의 요청에 따라 체육단체에게 책임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음.¹²⁾

11)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4(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의 신고) ① 누구든지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하였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스포츠윤리센터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현행법은 징계요구권을 부여하는데 그치고, 체육단체의 징계조치가 징계사유에 비해 가벼운 결과가 나올 경우 문체부장관 또는 스포츠윤리센터가 대응하기에는 다소 미흡한 측면이 있음.

즉, 법 제18조의9제2항 후단에 의해 문체부장관의 징계 요구를 받은 체육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하는바, 문체부장관의 징계요구에도 불구하고 징계조치를 하지 않은 체육단체의 해당 법 조항 위반은 명확하다 할 것임.

반면, 체육단체가 징계 조치를 하였으나, 당초 요구한 징계 수준보다 가벼울 경우에는 징계조치 자체는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체육단체가 해당 법 조항을 위반하였다고 단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개정안은 체육단체의 징계조치가 징계사유에 비추어 가볍다고 인정되는 경우 스포츠윤리센터가 해당 체육단체에 징계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12)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9(고발 및 징계요구) ① 스포츠윤리센터는 신고·상담 및 조사내용과 관련하여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스포츠비리 및 체육계 인권침해에 대하여 체육단체에 책임이 있는 자를 징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체육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고, 그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스포츠윤리센터는 조사내용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2항에 따른 징계요구, 제12조제1항에 따른 체육지도자 자격취소 등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스포츠윤리센터의 객관적인 조사 결과를 최대한 반영함으로써, 보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징계조치를 유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임.

다만, 현행법상 체육단체(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등)에 대한 감독권자가 문체부장관이고,¹³⁾ 체육단체에 대한 “징계요구권” 또한 문체부장관에게만 부여되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개정안과 같이 스포츠윤리센터에 직접적인 “징계 재심의 요구권”을 부여하기 보다는 문체부장관이 체육단체에게 징계요구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인 “징계요청권” 부여로 수정하는 것이 법 체계상 적절할 것으로 보임.

문화체육관광부는 현행법 제18조의9제2항 후단에 의해 입법목적 달성이 가능하므로 스포츠윤리센터에 직접 재심의 요구권을 부여하는 것에 반대하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375

13) 제43조(감독) ① 체육회, 장애인체육회, 도핑방지위원회 및 진흥공단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감독한다.